

## 2023년도 『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』 포스코 도입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포스코,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대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  
중소기업중앙회장

◆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/협업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

### I.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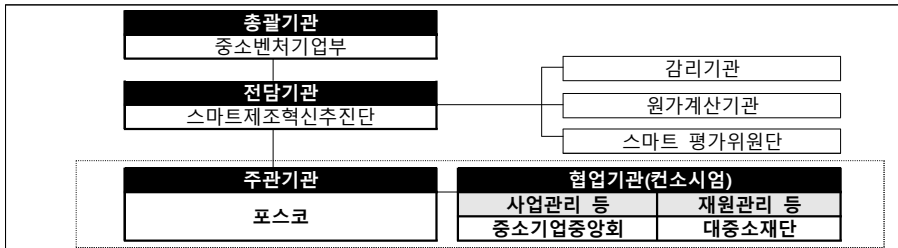
- Industry 4.0 시대, 미래형 제조공장 기반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-중견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

### II. 사업 지원계획

#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3.12.
- 지원분야 : 유형1(고도화), 유형1(기초), 유형2(기초)
- 지원규모 : 총 30개사 내외(기초 21개사, 고도화 9개사)  
\* 단, 도입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## □ 추진체계



#### □ 지원내용

- (구축비용 지원) 포스코가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
구분	지원조건	정부	중소·중견기업	
			포스코	70%
총 구축비용	유형 1	30%	30%	40%
	유형 2 기초-A (소기업 대상)	50%	50%	-
	유형 2 기초-B (중기업 대상)	30%	70%	-

-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  
\* 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
-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  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  - IoT, 5G, 빅데이터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  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#### □ 지원조건

구분	지원유형	정부 지원금(최대)	포스코 지원금(최대)	사업기간(최대)
유형1	기초	0.3억원 (총사업비 30%)	0.3억원 (총사업비 30%)	6개월
	고도화1	1.2억원 (총사업비 30%)	1.2억원 (총사업비 30%)	9개월
유형2	기초-A (소기업 대상)	0.1억원 (총사업비 50%)	0.1억원 (총사업비 50%)	6개월
	기초-B (중기업 대상)	0.06억원 (총사업비 30%)	0.14억원 (총사업비 70%)	

- \* 목표수준의 향상 없이 동일수준(기초→기초, 중간1→중간1)으로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. 단, 동일수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은 최대 0.6억원으로 제한
- \*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-1(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) 표준에 의한 수준 참고
- \*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
- \*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(유형1 한정)

□ 신청자격

구분	지원유형		신청자격	
			기업규모	목표수준
도입기업	유형 1	기초	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	- <b>기초 수준 이상</b> 구축 예정 기업 * 생산정보 디지털화
		고도화	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	- <b>중간1 수준 이상</b> 구축 예정기업 *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·분석
공급기업	유형 2	기초 A, B	국내 소기업, 중기업	- <b>기초 수준 이상</b> 스마트공장 구축 * 소기업(A), 중기업(B) 대상 (기준은 불임 1 참고)
		-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*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,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(관련 증빙자료 제출)		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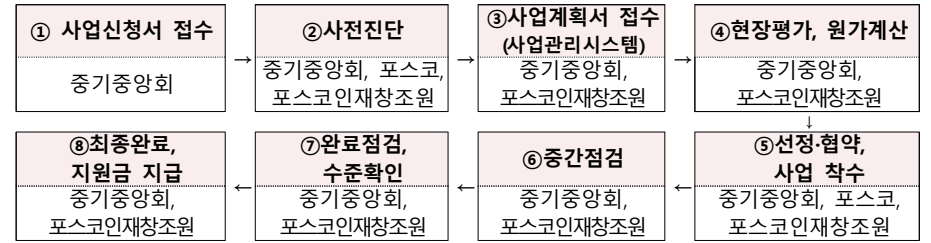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2023년 5월 10일(수) ~ 5월 23일(화) 18시까지 신청·접수
- (신청방법) [smartposco@kbiz.or.kr](mailto:smartposco@kbiz.or.kr) 메일 접수
- (제출서류)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
구분	제출서류
1-1	사업신청서 (원본 엑셀파일)
1-2	사업신청서 (인감 날인 후 스캔한 PDF 파일)
2	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단, 종된사업장의 경우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
3	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유효기간 이내)
4	도입기업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이내)
5	도입기업·공급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

※ 참고사항

- 사업신청서는 일정배수 이상 접수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
- 신청서 제출 기업은 포스코 추진지원단의 사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
-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별도 안내 예정

□ 지원절차(접수~사업 착수 단계까지 3~4개월 소요)



\* 구축완료 후 수준을 확인, 구축수준 미달 시 정부지원금 환수가능(완료점검에서 수준측정)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(평가방법) 1차 서류심사 - 2차 심층 인터뷰\* - 3차 최종심사 등  
포스코 스마트공장 추진지원단 위원 공동 심사  
\* 포스코 지정 장소 방문 필요하며, 인터뷰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안내
- (우대대상)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구조주물 등 뿌리기업</li> <li>· ESG 분야 관련 사업 지원기업 : 에너지 효율 제고, 친환경, 안전 등</li> <li>· 포스코 QSS 혁신, 일터혁신 컨설팅 등 혁신활동 참여 또는 예정기업</li> <li>*일터혁신 컨설팅은 2023년 신청기업에 한하며, 수행기관이 노사발전재단이어야 함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\* 지원제외 대상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

□ 지원제외대상

- 과제 신청일 기준 ‘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’을 수행 중인 기업  
\* 정부일반형,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 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(집중AS기간 수행중인 기업은 '23년 사업신청 가능)  
\*\* 단, 최종감리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
- 포스코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업
-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
\*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

< 부적격 사항 >

· 휴·폐업중인 기업	·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	·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·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'참여제한' 중인 기업	

□ 기타사항

- 유형2의 경우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(선택사항)
- 유형1의 경우 공급기업은 구축완료일로부터 도입기업의 시스템 적용 및 활용지원을 위해 6개월 간 A/S 지원 (필수사항)
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.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-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. 단,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
-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\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\*\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(권장)
  - \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(추후 세부사항 안내)
  - \*\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  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  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은 최대 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 - \* 소기업 규모 기준은 붙임1 참고
  - 도입기업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던 전산자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을 적극 권장
- 공급기업은 사업참여를 위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(Pool)에 등록(필수사항)하여야 하며, 자동화·센서·로봇 등 비솔루션(S/W) 기업도 공급기업 참여 가능

- 선정된 도입·공급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

구분	세부내용
①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, 공급기업(대표, 실무자)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 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,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- 교육기관 : 스마트제조혁신협회
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	- 대상 : 도입기업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 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2 확인]

- 정부지원금은 부가세 별도이며, 지원금에 대한 부가세는 도입기업이 부담
-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도입기업에 있음
  - 본 사업은 도입기업이 공급기업을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, 사업계획서 작성 이전에 공급기업 매칭을 완료해야 함
-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공급기업에 지급함
- 총 사업비 중 최대지원금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
- 도입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특정 분야, 특정 공급기업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III. 문의 및 연락처

#### □ 대표 문의처

○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(02-2124-4313, 4371 [smartposco@kbiz.or.kr](mailto:smartposco@kbiz.or.kr))

\* 빠르고 명확한 답변 위한 스마트한 상담창구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활용한 상담

①친구 기본화면에서 돋보기 클릭 ②검색창에 '스마트공장지원실' 입력 ③스마트공장지원실 "친구추가" ④상담화면에 문의사항 입력



#### □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연락처

구분	기관명	문의사항	연락처
주관기관	포스코	도입기업 모집일정, 모집방법, 심사결과 등	02-3457-1018 peoplestone@posco.com
수행기관	포스코인재창조원		054-240-5680 asej@poscohrd.com
협업기관	중소기업중앙회	지원자격, 제출서류, 우대사항, 기타 사업관리 등	02-2124-4313, 4371 smartposco@kbiz.or.kr

### 붙임 1 중소기업 규모 기준

\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식품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2. 음료 제조업	C11	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7.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
17. 수도업	E36	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	
19. 광업	B		
20. 담배 제조업	C12	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29. 건설업	F	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	
31. 금융 및 보험업	K	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	
35. 부동산업	L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

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*붙임 2****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**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)
  - (교육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  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  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  - (교육비용) 무료 또는 유료
  - (신청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<http://sbti.kosmes.or.kr>)를 통해 신청
- ※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
**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**

운영과정 구분	연수원명	전화번호
집합교육 웨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	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	031-490-1472
	호남연수원 (광주)	062-250-3000
	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	053-819-5001
	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	055-548-8045
	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	041-559-9225
온라인 교육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	031-490-1288